

<잉카 그룹 일반 구매 조건>

제1조 계약의 범위

본 잉카 그룹 일반 구매 조건(이하 "본 계약")은 협력업체가 제품을 공급하거나 협력업체가 잉카의 주문에 따라 잉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 계약에서 "잉카"는 구매 주문을 발주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협력업체"는 그러한 구매 주문을 수령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제품" 또는 "서비스"는 각 발주서(이하 "PO")에 명시된 자재, 구성품,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2조 구매 주문 및 일반적인 계약조건

- ① 본 계약에 따라 구매를 진행하기 위해 잉카는 협력업체에 PO를 발행하며, 잉카는 해당 PO를 잉카 그룹이 적용하는 전자 주문 시스템(이하 "잉카 전자 발주 시스템")을 통해 발송한다. 위 PO에는 요청된 납품일 및 단가가 명시되며, 본 계약 중 관련된 부분이 표시된다. 본 구매의 경우, 본 계약이 잉카와 협력업체 간에 맺은 여타의 구매에 적용되는 기타 약관이나 조건(발주 확인증, 견적서, 사양서, 납품서, 송장, PO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에 포함된 내용) 보다 우선한다.
- ② 협력업체는 (a) 협력업체가 잉카에 PO 수락을 통지한 시점 또는 (b) 협력업체가 PO에 따라 이행을 시작한 시점 중 이른 시점에 PO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③ 잉카의 요청에 따라, 협력업체는 잉카 전자 발주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 및 서비스 정보(사진 포함)와 협력업체 브랜드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해당 정보는 요청된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며, 잉카 전자 발주 시스템에 게시된다. 협력업체는 잉카에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전자 발주 시스템에서 해당 정보 및 자사 브랜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 ④ 잉카는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특정 물량을 구매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한다. 또한, 본 계약이 어느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독점적 권리부여로 해석되지 않음을 당사자들은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제3조 납품

- ① 협력업체는 각 PO에 명시된 제품 및 서비스(제품 및 서비스의 세부 사양서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 이를 포함함)를 잉카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협력업체는 합의된 납품일에 따라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 ② 협력업체는 제품이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적 조치 및 포장을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는 모든 제품 포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자재와 운송 효율을 최적화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 하며,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포장 재료에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 등). 운송을 위한 관련 비용(패키징, 상자 결박 등)은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③ 협력업체의 납품을 위한 운송이 특정 국가 내 운송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국경을 넘는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a) C-TPAT, AEO-S/F, ISO 28000 공급사슬 보안경영 시스템에 따라 인증 획득, (b) 신뢰할 만한 제 3자로부터 동등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인증. 협력업체가 (a) 또는 (b) 항목에 따른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

우, 협력업체는 잉카의 공급망 보안 요건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표준을 구현했다는 진술 및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납품 지연

- ① 협력업체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납품 예정일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는 납품 지연에 해당한다. 협력업체는 납품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납품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그 즉시 잉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통지서에는 납품 지연이 발생한 원인과 협력업체가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시정 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 ② 협력업체는 잉카에 지체상금으로, 지연된 제품 및 서비스 공급가액의 총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된 일수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상금의 총 금액은 지연된 제품 및 서비스의 총 공급가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주문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납품이 3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잉카는 관련 PO 및 지연으로 영향을 받은 여타의 다른 주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협력업체에 잉카가 다른 협력업체로부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기 위해 지불하기로 한 금액 및 기타 모든 비용 및 손실을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본 항에 따른 권리는 여타 조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제5조 수수료, 청구서 발행 및 지급

- ①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모든 수수료, 단가, 요율 등(이하 “납품단가”)은 잉카 전자 발주 시스템의 규정 등에 따라 설정되며, 각 PO는 이러한 납품단가에 따른 금액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잉카 전자 발주 시스템에 표기된 공급단가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기타 세금, 관세, 부담금, 비용 또는 요금은 포함된 금액이다.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본 계약의 결과로 세금(원천징수 되는 경우 포함) 또는 기타 정부 당국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세금, 관세 또는 기타 부담금은 전적으로 협력업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며, 이러한 협력업체의 책임은 협력업체 또는 잉카 중 어느 일방이 관련 세금, 관세 또는 기타 부담금을 지불하거나 원천징수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력업체에 부여되는 의무이다. 위 사항과 무관하게 잉카가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잉카는 세금, 관세 또는 기타 부담금의 납부를 위해 필요한 금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할 대금에서 원천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협력업체가 스웨덴에 소재한 직원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송부하는 청구서에는 (a) 협력업체의 F-tax certificate 와 납세자 번호를 참조하거나, (b) 스웨덴에 소재한 직원 또는 하도급업체가 수행한 서비스와 관련된 금액의 상세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본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가 발행한 각 청구서는 관련 PO 번호 등의 내역을 참조할 수 있어야 하며, 구매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에 관한 상세 사항을 담은 서면 명세서를 포함해야 한다. 잉카는 위 필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불완전한 청구서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며, 잉카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불완전한 청구서의 수취 혹은 그에 따른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그 행위는 잉카의 의무 불이행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은 잉카가 올바르게 기재된 청구서를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한다.
- ④ 잉카는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잉카가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여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청구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일반 진술 및 보증 사항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 (a)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자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조직되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법적 지위가 양호하다;
- (b)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할 모든 권리, 권한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c)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다;
- (d)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7조 특별 보증 사항

① 협력업체가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제품이 항상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함을 보장한다:

- (a) 제품이 모든 합의된 사양 또는 요구 사항에 부합하고 이를 준수하며 작동 가능할 것;
- (b) 제품이 샘플 및 프로토타입 또는 마케팅 담당자가 언급한 특성을 온전히 보유할 것;
- (c) 제품이 그 의도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
- (d) 설계, 재료 및 제작 관련 결함이 없을 것;
- (e) 모든 적용 가능한 법적 요구 사항 및 기준, 특히 환경 및 안전 법규와 관련된 기준을 충족할 것.

② 협력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자신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며, 운영 및 성능에 오류가 없고, 모든 측면에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할 여지가 있는 세부기준들을 준수하며,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기능과 특성을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③ 잉카는 제품 및 서비스에 나타난 결함이 있을 경우, 그 결함에 대해 서면으로 협력업체에 결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위 제7.1 및 제7.2 항에 명시된 협력업체의 보증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협력업체는 결함이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신속하게(사양에 명시된 특정 시간 내에) 자체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리, 교체 또는 재수행(재수행이 잉카에 합리적으로 편리하고 결함의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는 경우) 해야 한다. 잉카는 또한 손해, 비용 및 경비에 대한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

①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어느 당사자에게도 상대방의 콘텐츠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 ② 잉카가 본 계약에 따라 기대하고 주문한 대로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권 또는 접근 권한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사용권 또는 접근 권한은 잉카에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잉카는 잉카의 직원, 승인된 자문사 및 계열사가 이 계약에 명시된 방식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권리의 침해

협력업체가 공급한 제품 및 서비스가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일체의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한다. 협력업체는 제품 또는 그 사용이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기반하여 제 3자가 잉카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청구나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를 잉카에 배상하고, 잉카가 면책되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사전에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발생한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② 전항의 또는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 비밀 유지 또는 비공개 의무 조항의 위반, 제9조(권리 침해)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와 관련된 제 3자의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1조 비밀 유지 의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하도급업체 또는 계열사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나 법원 또는 정부 당국의 요구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계약 기간 동안 및 이후에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합의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하도급업체 또는 계열사에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하도급업체 또는 계열사가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정보를 공개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2조 비공개 의무

협력업체나 그 직원, 또는 협력업체가 고용한 제 3자는 잉카, 잉카 그룹 또는 인터 이케아 그룹과의 관계 또는 본 계약의 존재를 마케팅이나 자금 조달 목적, 또는 회사 발표나 보도 자료에서 언급할 수 없으며, 잉카, 잉카 그룹 또는 인터 이케아 그룹의 상호, 상표, 서비스 마크, 로고 또는 기타 고유 브랜드 특징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터넷을 포함하여 공공에 알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계약의 목적상, "잉카 그룹"은 Ingka Holding B.V.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모든 회사를 의미하며, "인터 이케아 그룹"은 Inter IKEA Holding B.V.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모든 회사를 의미한다.

제13조 규칙의 준수

- ① 협력업체는 www.ingka.com/suppliers에 게시된 "제품, 서비스, 자재 및 부품의 책임 있는 조달을 위한 IKEA의 방식 (IWAY)"을 읽고 이해했음을 인정하며, 협력업체는 여기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의 목적상, IWAY에서 사용된 약어, 용어의 정의는 IWAY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하며, 본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협력업체는 본조 제1항과 더불어 www.ingka.com/suppliers에 게시된 잉카 그룹의 비즈니스 윤리 부록을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제14조 감사

- ① 협력업체는 잉카가 본 계약에 명시된 요구 사항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업체 및 협력업체의 하도급업체가 수행하는 관련 사업을 감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잉카는 자체 비용으로 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감사에 관한 본 조항은 본 계약과 관련된 협력업체의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 분야(예: 정보 보안, IWAY)에 대해 당사자 간에 별도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사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② 감사는 잉카 또는 잉카가 임명한 제 3자가 협력업체에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한 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는 통상적인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정규 업무 시간 내에 실시되어야 하고 협력업체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잉카는 계약 연도당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이러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업체는 잉카가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문서 및 인력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력하기로 한다. 감사 결과,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어 잉카가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정한 경우, 잉카는 해당 조사를 협력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보험

협력업체는 적절한 보험 가입을 통해 영업의 원활한 수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잉카가 요청할 경우 그러한 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빙 자료를 잉카에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든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으로 인해 납품이 한 달 이상 지연되는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본 계약 또는 해당 PO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 하도급

협력업체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하도급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이를 잉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하도급업체의 업무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들이 완전히 준수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하도급업체의 의무 불이행, 과실이 존재할 경우 이를 협력업체 자체의 의무불이행,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18조 기타

- ①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로서, 당사자 간에 본 계약 체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확인한 사항 및 협상은 본 계약으로 대체된다. 서면으로 작성되어 양 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한 명시적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여타의 방법으로 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수정, 변경, 개정 또는 포기한 행위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②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해 관련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조항이나 다른 조항에 대한 향후 위반에 대한 포기로 간주하지 않으며,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생략하더라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③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으며, 그러한 동의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될 수 없다.

제19조 준거법 및 관할

- ① 본 계약 및 모든 구매 주문은 관련 PO에 명시된 유관 잉카 법인 소재지의 실정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계약 또는 구매 주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이의, 청구, 그 위반, 해지 또는 무효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PO에 명시된 유관 잉카 법인 소재지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양 당사자는 위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함에 동의한다.